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	IT검사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안기복 선임검사역	연락처	02-3145-7429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회사 내부 서버와의 통신/교환 및 내부 데이터나 기타 정보의 입력 없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·분석 하여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웹서비스를 외부망에서 이용하려는 경우,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절차 등이 적용되는지의 여부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판단이유	 □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'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'시 적용되며(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), ○ '정보처리의 위탁''이란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*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4조제1항 □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이용하려는 웹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가 본인의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의 전산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보이고, ○ 귀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위탁하지 않는다면「전자금융 감독규정」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					

- **** 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 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